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3 선고 2020가단523534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권오용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2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8,957,872원 및 그 중 98,111,042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9. 9. 27.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7. 접수 제374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8. 접수 제430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2. 접수 제15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7. 5. 26.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5. 26.부터 2018. 5. 26.까지(그 후 2019. 11. 25.까지로 변경되었다), 채권자 E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A은 2017. 5.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1) 피고 A은 2019. 9. 27.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E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0. 4. 29. E은행에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98,111,0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B의 재산분할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

1) 피고 A과 피고 B은 2007.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9.경 협의이혼하면서 피고 A이 2010. 3.경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9. 1. 27.부터 2020.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상태였는데,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7. 접수 제374306호로 2019. 9.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9. 11.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1,000,000원에 매도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8. 접수 제430315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은 2019. 11.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000,000원에 매도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2. 접수 제1590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은행 대위변제금과 약정 위약금 등을 합한 98,957,87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8,111,0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인 2021. 2.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 A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그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주었는바, 이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어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2) 수익자인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C, D은 위 사해행위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악의로 추정된다.
-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과 피고 B은 2007. 6.경 혼인한 이래 2019. 9.경 이혼하기까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피고 A과 피고 B은 각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이혼 당시 가액은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29,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혼 당시 피고 B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F

G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I

구 조 : 벽돌조

면 적 : 35.9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F 대 338.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338.7분의 21.09

